

# 충남삼성고등학교 기숙사세칙

[시행 2014.3.1.] [2016.6.2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충남삼성고등학교 기숙사세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기숙사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본교의 교육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①항 제7호, 제8호의 학교규칙 기재 사항 및 본교의 「학교생활규정」 제2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 제2장 운영

제4조【운영 목적】① 본교 기숙사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율적인 자기관리 능력 배양
2. 질서와 배려의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고취
3. 학교의 인성교육 목표 실현 및 학생들의 바람직한 습관 형성
4. 통학이 불가능한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5. 학습, 연구, 체육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②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는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본인의 의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주체】기숙사는 학교가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기숙사 위탁관리 및 미화당직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하 '운영회사')가 계약사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숙사비】① 기숙사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 금액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② 기숙사비는 공휴일과 의무귀가 일수와 무관하며 1개월 단위로 징수한다.

③ 중도에 입사 및 퇴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비를 일부만 납부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④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징수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숙사소위원회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소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사 선발 원칙과 방법
  2. 기숙사 호실 배정 및 변경
  3. 기숙사생 일과표 및 귀가 일정
  4. 기숙사생 생활 지도
  5. 기숙사 생활 지원(세탁, 침구, 청소 등)에 대한 사항
  6. 기타 기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제8조【자치위원회】① 원활한 기숙사 운영과 학생 자치를 위해 기숙사자치위원회를 둔다.

- ② 자치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중임 제한은 없다.
- ③ 자치위원회 임원은 기숙사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구체적인 선발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④ 자치위원회 임원의 종류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위원회 회장 : 2명(1, 2학년 각 1명씩)
  2. 자치위원회 부회장 : 5명(1, 2학년 각 2명, 3학년 1명)
  3. 층장 : 13명(각 층·동별 각 1명씩)
- ⑤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사 생활지도교사(이하 '사감')의 생활지도를 보조
  2. 기숙사생 의견 수렴
  3. 학생 자치 규약 제정 및 시행
  4. 기타 기숙사 운영 보조
- ⑥ 자치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3장 입사

제9조【입사 기간】① 기숙사 입사는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사 운영을 고려하여 입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② 입사 날짜는 학기 시작 전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방학 중 입사는 학기 중 입사와는 별도로 운영한다.

제10조【입사 인원】① 기숙사 입사 인원은 본교의 교육 목표와 학생 수 및 학생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목표상 필요한 경우 특정 학년이나 학급 소속 학생들, 혹은 개별 학생의 의무 입소 여부와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선택 입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년 및 남녀 학생의 분포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입사 인원을 정한다.
- ④ 교육상 필요한 경우 기숙사 건물을 동별 혹은 층별로 성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입사 대상자 선발】① 제10조 2항의 의무 입사자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② 선택 입사 대상자는 중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에서 공지하는 기간 내에 입사신청서[별표1] 및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③ 기숙사 선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1. 학교와 학생 거주지 간의 거리
    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사항(별점, 징계 등)
    3. 교과 성적
    4. 가정 형편 및 경제 상황
    5.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내용
  - ④ 구체적인 기숙사 선발 기준 및 배점에 대한 사항은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이 정한다.

- 제12조【기숙사선발위원회】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을 위한 심의 기구로서 기숙사선발위원회를 둔다.
- ② 기숙사선발위원회 심의위원은 교감, 학부모 대표, 학생생활부장, 사감장, 전문상담자로 구성한다.
  - ③ 기숙사선발위원회 자문단은 학교법인 업무담당자 및 행정실 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기숙사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 ④항에 따른 기숙사 선발 배점 적용 결과
    2. 학년 및 남녀별 기숙사 선발 대상자 명단
    3. 기타 기숙사 선발과 관련된 특이 사항

- 제13조【호실 배정 및 변경】① 입사생의 호실은 학년, 성별, 생활 태도, 교우 관계, 야간 면학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학교폭력, 건강, 정서적 문제 등의 이유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호실 변경이 가능하다.

- 제14조【중도 입사】① 전출,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기숙사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중도 입사가 가능하다.
- ② 중도 입사 기회는 제12조 4항의 기준에 의해 탈락한 학생들 중 대기 순번이 높은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 ③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조 2항과는 별개로 중도 입사가 가능하며 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4장 생활

- 제15조【기숙사생의 의무】① 기숙사생은 본교 학생으로서 요구되는 품격을 기숙사 생활 속에서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함께 생활하는 학생을 가족처럼 존중하고 도와줘야 한다.

2. 각종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3. 모든 사람들에게 예절을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
  4. 소음, 악취, 노출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 ② 기숙사생은 학교 및 운영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안전 훈련, 캠페인 및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16조【일과】① 기숙사생의 주중 및 주말 일과는 학교의 학사일정 및 일과표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② 점호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 ③ 학생은 기숙사 일과에 맞추어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출입】① 기숙사 출입문은 외부인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학생의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가 정한 일과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만 개방하며, 필요한 경우 개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개방 시간 외에 기숙사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운영회사 사무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생은 기숙사를 출입할 때 학생증을 정해진 단말기 혹은 출입 장치에 인식시켜야 되며, 분실 혹은 파손 등의 사유로 힘든 경우에는 그 즉시 운영회사 사무실에 출입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외출 외박】① 외출은 당일 복귀를 전제로 한 출타, 외박은 1박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한 출타로 정의한다.

- ② 외출 및 외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건강으로 인한 진료, 입원 및 요양 등의 사유
  2. 경조사 등의 불가피한 가정사
  3. 개인 자격검정 또는 학교를 대표한 교내외 행사 참여
  4. 봉사 활동
  5. 종교 활동
  6. 기타 학교장이 허락한 사유
- ③ 외출 및 외박 사유가 발생할 시 학생은 사전에 해당 내용을 교내 전산망을 통하여 신청해야 된다. 만약 교내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임 혹은 보건교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④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와 담임교사 모두가 승인하였을 때 외출 및 외박을 나갈 수 있다. 다만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급한 경우나 학부모와 담임이 모두 부재중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사감이나 보건교사 등의 교직원이 외출 및 외박을 대리 승인하고 그 내용은 학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알려줄 수 있다.
- ⑤ 학생은 정해진 외출 및 외박 복귀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제19조【복장】① 기숙사 내 복장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품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 한다.

- ② 등교 및 하교 시 복장은 「용의복장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음식물】① 학생들의 건강과 기숙사 내 청결을 위하여 음식물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건강상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은 미리 보건교사의 허락을 받고 기숙사내에서 섭취할 수 있다.
- ③ 허가받지 않은 부적절한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적발되거나 섭취한 흔적이 발견될 시에는 「생활지도세칙」에 의거한 조치와 더불어 전량 압수 및 폐기 조치가 가능하다.

제21조【금지물품】① 학생들의 안전과 인성교육,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숙사내 반입 금지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PC 등)
  - 2. 허가받지 않은 음식물
  - 3. 전열기(고데기, 전기 난로 등)
  - 4. 스킨, 로션, 선크림을 제외한 색조 화장품
  - 5. 사행성 오락기구(화투, 트럼프, 보드게임 등),
  - 6. 위험물품(흥기류, 인화물질 등)
  - 7. 불건전 자료(만화, 음란물 등)
  - 8. 기타 학교장이 정한 금지 물품
- ② 1항의 금지물품 항목들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일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 ③ 반입 금지물품이 적발될 시에는 「생활지도세칙」에 의거한 조치와 더불어 전량 압수 및 폐기 조치가 가능하다.

제22조【시설 및 비품 사용】① 입사자는 항상 에너지절약과 정리정돈을 실천해야 한다.

- ② 공용 또는 개인으로 사용하는 물품 및 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정리정돈 해야 한다.
- ③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파손을 금한다. 시설물의 파손 발생 또는 발견 시 지체 없이 사감에게 알려야 하며 적절한 조치(필요시 변상, 복원명령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생활지도】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본교 재학생들은 「학교생활규정」 및 기타 세칙에 의거하여 지도한다.

- ② 운영회사 소속의 사감에게 본교 재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학생들이 생활지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기숙사 생활지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학생생활부장이 사안을 중재할 수 있다.

제24조【귀가】① 학교는 기숙사의 시설점검, 대청소, 운영인력의 직무연수 및 휴가, 학생들의 생활안전 등을 위하여 귀가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귀가 일정은 방학, 명절, 재량휴일 등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귀가일에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귀가해야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학생들이 체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5장 퇴사

제25조【퇴사 구분】① 퇴사는 당연 퇴사와 희망 퇴사, 명령 퇴사로 구분한다.

- ② 당연 퇴사는 학기, 방학의 종료나 졸업, 자퇴, 전출, 휴학 등의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다.
- ③ 희망 퇴사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청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다.
- ④ 명령 퇴사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장의 결정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다.

제26조【당연 퇴사】① 당연 퇴사 일정은 학사일정 및 학년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천재지변이나 법정 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숙사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학교장이 당연퇴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자퇴, 전출, 휴학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당연 퇴사하는 경우에는 학적 변동 기준일 이전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27조【희망 퇴사】① 희망 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 허용 여부는 학교장이 정한다.

- 1. 건강상의 이유(격리, 입원, 요양 등)
  - 2. 학교 폭력
  - 3. 심각한 교우 문제
  - 4. 정서적인 어려움 호소
  - 5. 가정사 및 경제적 문제
  - 6. 학습 및 진로, 진학 활동
  - 7. 기타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이유
- ② 제10조 2항의 의무 입소 대상자인 경우에는 희망 퇴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희망 퇴사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희망퇴사원[별표2]을 작성하여 학생생활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 ④ 희망 퇴사 후 다시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명령 퇴사】① 학교장은 학생 안전 및 선도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학생의 기숙사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생활규정」 제71조 6항의 의한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조치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조치
  - 3. 법정 전염병 등의 이유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4. 기타 학교 교육 및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 ② 명령 퇴사 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 ③ 퇴사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부장을 통해 이의 재기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기숙사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④ 명령 퇴사 기간에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학생 및 학부모의 소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령 퇴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9조【퇴사 절차】① 퇴사자는 호실을 깨끗이 청소한 후,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퇴사자는 손실 및 망실 물품을 확인하고 손망실 확인 시 이에 대해 배상 혹은 정산해야 한다.

③ 퇴사자는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개인물품을 정리한 후 퇴사해야 한다.

④ 위 항의 조치가 미흡한 채로 퇴사한 경우에는 학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퇴사 이후 개인 소지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학생에게 수취하도록 즉시 안내한다. 학생이 수취하기를 거부하거나 수취 안내 후 일주일간 보관 후 모두 폐기한다.

⑥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대금의 징수 및 환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숙사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기숙사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별표1: 기숙사입소신청서 양식]

<h2 style="margin: 0;">20〇〇학년도 〇학기 기숙사 입소신청서</h2>						
학 생	학년		반(HR)		성별	남 / 여
	이름			E-mail		
보 호 자	이름			관계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① 1순위 연락처 : ② 2순위 연락처 :				
주 소 (필수)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월 ##일 기준)와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입소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증빙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 )	특별시 광역시 도	( )	시 군 구	( )	읍 면 동
	상세 주소:					
참고 사항 (선택)	※ 기숙사 선정 및 생활에 대하여 학교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〇〇학년도 〇학기 충남삼성고등학교 기숙사 입소를 희망합니다.						
				신청인(학생명) :	(인)	
				보 호 자 :	(인)	
20    년        월        일						
충남삼성고등학교장    귀하						

[별표2: 희망퇴사원 양식]

<h2 style="margin: 0;">기숙사 희망 퇴사원</h2>						
학 생	학년		반(HR)		성별	남 / 여
	이름			E-mail		
보 호 자	이름			관계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① 1순위 연락처 : ② 2순위 연락처 :				
퇴사 사유 (필수)	※ 기숙사를 퇴사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작성. 필요시 의사소견서, 상담록 등 첨부 가능.					
담임교사 의견	담임교사 : (인)					
담당사감 (사감장) 의견	담당사감(사감장) : (인)					
위와 같이 충남삼성고등학교 기숙사 퇴소를 희망합니다.						
신청인(학생명) : (인) 보 호 자 : (인)						
20    년    월    일						
<b style="font-size: 1.2em;">충남삼성고등학교장</b> 귀하						